

『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민법」 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근거 없이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(정의)에서 공유재산이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나 동산을 의미하는 바,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“시장”을 “구미시”로 수정 (안 제4조제6항)
- 「민법」 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“물품의 손·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”라는 조항을 부분 삭제 (안 제5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민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민법」 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근거 없이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6항 후단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”로 수정하였고,
-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“경비 및 물품의 손·망실시”를 “경비”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, 「민법」 제750조 등에 의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